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6조의 요약

법인의 각종 지출·경비 중 적절한 금액은 손금산입하지만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데 다음과 같이 비교요약할 수 있다.

| 호 | 계정금액 | 손금산입 범위액 | 손금불산입되는 금액 |
|-----|----------|---|--|
| 제1호 | 인건비 | 임직원 모든 급여, 인건비, 임원상여금 중 지급 규정 범위내 금액, 지배주주의 동일 직급 해당 인건비, 규정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담금 | 이익처분상여금, 임원상여금 규정 초과액, 지배주주의 동일직급 초과 보수(규정 초과 퇴직금) |
| 제2호 | 복리후생비 | 얼거된것(직장체육비, 연예비, 우리사주운영비, 임직원퇴직관련 보험료 등,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임직원경조사비 등) | 얼거되지 않은 복리후생비로서 법적·사회통념상 범위 초과액 혹은 통념상 지출필요없는 금액 |
| 제3호 | 여비·교육훈련비 | 일반임직원의 업무관련 여비·교육훈련비 | 업무무관교육훈련비, 지배주주의 모든 여비·교육훈련비 |
| 제4호 | 타법인 공동경비 | 매출액·출자비율·인원수 비율 등에 의한 합리적 배분경비 | 합리적 배분계산방법을 초과한 공통비처리액 |
| 제5호 | 업무비용 | 업무와 직접 관련경비 | 직접 관련성 없거나 적은 경비 |

●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
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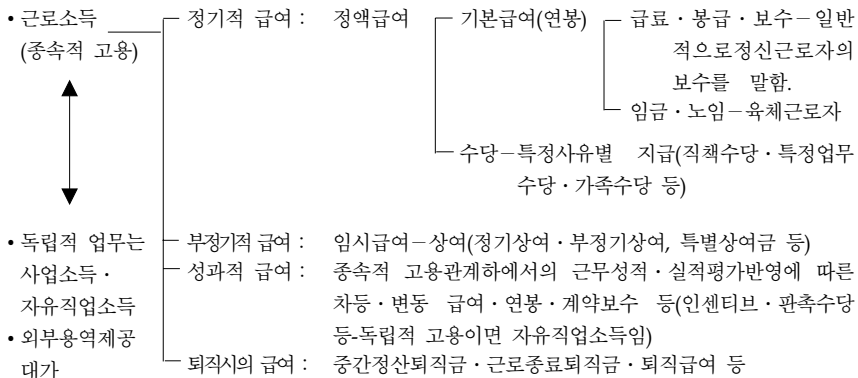
Ⅰ. 과다·부당인건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26조제1호)

1. 인건비의 손금산입

① 수익·익금창출을 위한 기본요소의 손금산입

법인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및 기술·경영자원이 복합되어 수익·익금을 창출하는바, 이러한 수익의 대응항목으로서 필수적인 것이 인적자원이며 인적 자원의 비용이 인건비이다. 인건비의 대표적 개념이 임직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등인데,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이라 하며, 과거근로에 대한 퇴직시의 인건비가 퇴직급여, 즉 퇴직소득이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중 정상적 금액은 모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비정상적 금액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유사인건비의 범주로서 정규임직원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유계약자의 성과급 실적수당, 수수료, 외부인력과건조직의 노무인력제공용역비 등도 있는데 이들은 일반경비로서 세법상 인건비 개념자체는 아니다.

② 인건비의 유형구분



③ 근로자·임직원에게 대한 급여 등의 비용인정여부와 과세여부

기업근로자 등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법인의 손비인정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 수 령 자 | 법인세법상 규정 | 소득세법상 과세방법 |
|------------------------------|--------------------------|---|--|
| 봉급적 성질 (급여·보수·임금) | 사용인 | 손금산입(급여·상여·성과급 모두) | 근로소득과세 |
| | 지배주주임직원 | 정상보수는 손금(동일직급보다 초과보수는 손금불산입) | 근로소득과세 |
| | 상근임원 | 손금산입 | 근로소득과세 |
| | 비상근임원 |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과세도 가능함. |
| | 노무출자사원 | 손금불산입(합병회사·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은 노무자체가 출자이므로 배당으로 보기 때문임) | 배당소득과세 |
| | 신용출자사원 | 손금산입 | 근로소득과세 |
| 상여금적 성질(특별상여) | 사용인 |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되지만 전환사채, 우리스주, 주식매수선택권 방법은 손금산입) | 근로소득과세 |
| | 임원(주주, 사원, 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 범위내의 상여금(손금산입) 지급기준초과 상여금(손금불산입) 이익처분상의 상여금(손금불산입) | 일정액은 근로소득,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소득과세함. |
| 퇴직금적 성질(퇴직급여·퇴직위로금, 현실적 퇴직·) | 사용인 | 전액 손금산입 | 퇴직소득과세 |
| | 임원(출자임원,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 |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액 범위내의 금액과 근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중간정산액: 직원의 퇴직소득 |

| | | | |
|-------|---------------------|---|---|
| 해고수당) | 액주주포함) | <p>법상 금액 중 큰 금액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부인</p> <p>2.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손금부인상여금 제외)의 10%에 근속연수(1년 미만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가능 : 단,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없어지는 조건임. • 규정범위내 금액은 퇴직소득과세, 초과액은 근로소득과세 • 조기퇴직금(ERP)도 규정에 있는 금액은 퇴직소득, 규정없는 임의성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 | 관계회사 전·출입 (계열사간 승계) | 근무기간 합산하여 지급시 각 법인의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산입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최종 근무법인 이행 |
| | 해산시 | 임직원 퇴직위로금은 최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 퇴직소득과세 |

④ 급여 등 기본급은 임직원 모두 전액 손금산입

인건비는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의거 손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나 조건이 없는 한 손금산입된다.

인건비 중에서 매월의 정규적 근로대가인 급여·기본보수·임금 등은 당연 손금사항이다. 따라서 과다하지 않은 급여라면 손금산입되며, 급여에 대해서는 시행령상 특별히 손금불산입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 본 법 시행령 제 43조제3항이 지배주주 등 임직원의 동일직급자 초과보수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건비·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1) 일반사용인의 인건비

일반직원 등 임원 아닌 사용인의 인건비는 법인의 순자산증가 혹은 수익·익금창출을 위한 필수적 업무원가인데, 특별한 제약조건이나 규정없이 손금산입 적용된다. 인건비의 유형으로는 급여·상여금 및 퇴직금 등이 있으며 유사 인건비로 복리후생비 등도 업무에 직접·간접 관련된 금액은 손금산입된다.

① 지배주주 임원·사용인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법인의 지배주주임원이나 지배주주사용인은 법인의 업무와 손익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인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동일 직위나 직급에 있는 일반 임직원(지배주주임직원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법인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들의 관계에 따라 주주 등이면 배당소득, 다른 특수관계 연결관계에 속하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다. 여기서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이러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주주의 지분비율이 1% 이상이면 다른 특수관계주주의 지분비율을 합하여 최대지분 보유집단을 지분비율정도에 상관없이 지배주주라 하며, 최대주주집단이 아닌 경우는 지배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집단이 아닌 2대 주주집단의 임원·사용인이라면 동일직급 임직원보다 초과되는 보수를 받는다 하여도 무작정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직원 보수의 업무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그러나 지배주주집단임직원의 보수 중 초과보수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지배주주여부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특수관계 있는 자란 ① 친족, ② 회사경영에 영향력 있는 자와 그 친족, ③ 해당 주주 등과 위 친족(①과 ②)에 해당하는 자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5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⑤ ③ 및 ④에 해당하는 법인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그리고 ⑥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영 제87조제1항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 제52조에서 해설 계기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09. 2. 4 개정)
 -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임원의 인건비·상여금 등

① 임원인건비의 손금산입과 임원 범위

임원의 인건비도 과다하거나 부당하지 않고 적절한 범위내라면 모두 손금에 산입된다. 여기서 임원이란 사회통념상으로는 회장·사장·대표이사·이사와 감사·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및 그밖의 임원에 준하는 자(예를 들면 고문·상담역 등으로서 임원대우를 받는 자)를 가리키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이사 회구성원 등과 같이 경영진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익처분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및 종업원 지주보상액의 손금산입

임원에 대한 인건비라 하여도 당연도 소득의 원가요인이 아니고 전년도 잉여금처분 및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수익·비용대응원칙개념상 당연도 익금에 대응하지 않는 손비처리 항목이므로 당연히 기간손익의 구분원칙상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시행령 제20조제1항 방법의 성과급, 즉 회사임직원에 대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관련 성과급,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이익잉여금처분감액개념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일지라도 손금산입한다. 주로 종업원 지주제와 관련된 사항들이나, 당장의 현금지급이 아니고 미래지향적 보수지급방법으로 손금산입지원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삭 제 (99. 12.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10. 2. 18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③ 노무 및 신용출자사원 보수의 손금산입범위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 노무출자사원도 있는데 여기서 노무는 근로행위가 아니고 출자행위 자체이다.

즉,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의 근로제공은 자체가 출자행위이므로 지급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고 결산 후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노무출자 아닌 출자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앞의 시행령을 참조한다.

④ 임원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결의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된 기준범위내 상여금 금액은 손금산입하는바, 임원이면 출자임원이나 비출자임원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임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법인의 손익을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출자임원이나 비출자임원에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내 금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여기서 지급기준은 임원개별기준이건 혹은 총액기준이건 상관없으며, 지급시점보다 이전에 미리 결정된 것을 말하며, 사후에 결정하여 소급적용한다면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⑤ 비상근임원 보수의 손금산입범위

임원으로 역할을 하는 자 중에는 근무가능시간의 일부나 특정업무에 대하여만 간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비상근임원이라 한다. 이러한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즉 본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를 제외하고는 지급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임원해산수당 위탁금의 손금산입

이밖에 법인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례

임원의 상여금과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임원의 자녀에게 특별히 급여지급규정에 명시안된 교육비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동 보조금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 ◎ 확정되지 아니한 임원상여금을 사업연도중 사용인의 상여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고 우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 사업연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과 상계할 경우 동 선급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무상으로 동 선급금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가지급금에 대한 제반 불이익을 받게 됨.
- ◎ 임원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규정된 상여금 이외에 과거의 공로와 업적을 참작하여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공로금 성격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급여지급기준 범위내에 의한다면 손금산입됨.

3) 임직원의 퇴직급여 등

① 임원·사용인의 현실적 퇴직시의 퇴직급여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나 퇴직금지급규정상 많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임원·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확

정된 때 손금산입한다. 퇴직시에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다른 문제로 실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향후 실제 지급시 손금산입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퇴직금 손금산입가능액 범위**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의 손금용인가능금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퇴직전에 회사사규, 규정, 기준 및 노사협약 등으로 미리 확정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다면 규정으로 계산된 해당 금액이 손금산입되며,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급여최소액이 계산된다. 그러나 퇴직급여 규정이나 별도의 객관적 기준내용에 없는 추가금액·임의적 위로금액·특별공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니고 상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직원·사용인인 경우는 상여금이라도 손금산입되지만 임원인 경우는 지급규정 초과된 상여금이 되므로 손금불산입된다.

③ **현실적인 퇴직시에 손금산입**

임원이나 사용인 모두 회사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해야 퇴직급여가 손금산입되는데, 현실적 퇴직이란 실질적 퇴직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시기는 임직원이 실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종속적인 고용관계의 종결을 뜻한다. 임원퇴직시에도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바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상법상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중임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치 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④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직원의 임원취임, 중간정산 등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시기는 현실적인 퇴직시점이므로 현실적 퇴직시점이 아닌 경우 퇴직급여 지급해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사용인이 법인임원으로 승진하여 취임하거나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한 퇴직 등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지급액을 손금산입한다. 이밖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간정산시점에도 손금산입되며, 임원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향후 퇴직급여가 없어지는 조건이면 해당 시점까지의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액도 손금산입된다.

또한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무주택으로 주택구입시,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시,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재해를 입어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⑤ 법인사용인의 임원취임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의 연장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인에 대한 보수 및 권한과 임원에 대한 보수 및 권한·보상체계가 크게 다르므로 퇴직으로 하여도 문제없다는 뜻이다.

퇴직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로 취임한 때가 아니고,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로 본다. 물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의 손금산입도 반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손금산입이 연기되며,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⑥ 현실적 퇴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처리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임원 등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해당지급액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물론 중간정산의 경우는 퇴직급여손금산입이 되는데 중간정산이란 임원·사용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법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개념에서 적법히 인정되므로 임원·사용인의 임의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중간정산한 경우는 퇴직급여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⑦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금액계산

임원퇴직급여 규정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적법히 위임된 별도의 임원퇴직급여 규정 등으로 규정된 경우는 해당 정관이나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이 손금산입된다. 정관에서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정관상 임원퇴직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를 결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정관에 위임된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은 앞에서 말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즉, 미리 결정된 기준이어야 하지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결의는 규정이 아니다.

정관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손금불산입상여금 제외, 손금산입상여금 포함)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기간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안분계산하며 1월 미만은 불포함한다)으로 한다.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및 출자임원도 모두 포함한다. 임원은 주주의 위임을 받아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이므로 출자임원이나 비출자임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⑤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3. 31 개정)

⑧ 퇴직급여 손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및 상여소득간주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이나 계산규정을 정하지 않은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상기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동안 총급여액×10%×근속연수(년미만은 월수 안분계산)로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만 손금산입한다. 즉, 이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급여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그 나머지 초과금액이 있다면 이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손금불산입하고, 개인은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한다.

4) 출자관계법인에 진출된 사용인의 퇴직급여

① 관계회사 진출입의 퇴직제외와 본인의 임의선택

법인이 확장하면서 자회사·관계회사 설립 및 기업매수·합병(M&A) 등에 따라 사용인이 다른 법인에 진출하거나 전입하여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정책에 따른 퇴사 및 입사이므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세법도 퇴직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시기로 볼 수 없으며, 관계회사전출시 해당퇴직급여를 상대방회사에 지급하여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최종 퇴직시 안분계산한다.

물론 전출하는 본인이 현실적 퇴직이라 보아 퇴직급여를 요구하고 전출법인의 고용관계가 정산완료된다면 퇴직처리하여 반영할 수는 있다.

② 각 출자관계법인간 퇴직급여의 안분계산

사용인이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때에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용인이 그후 실제로 퇴직할 때에 전출·입법인이 각각 손금으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각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로 보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정산 및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회사에서 일괄 이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9. 2. 4 신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신설)

▲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

인으로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2010. 3. 31 개정)

상기 시행규칙 내용은 다음의 산식으로 표시된다.

[전입법인이 계상할 퇴직급여]

$$= \text{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전입·전출 법인 근속기간 통산계산액)} \\ \times \frac{\text{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액}}{\text{전출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액} + \text{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액}}$$

[전출법인이 계상할 퇴직급여]

$$= \text{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전입·전출 법인 근속기간 통산계산액)} \\ \times \frac{\text{전출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액}}{\text{전출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액} + \text{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액}}$$

이 경우 전출법인의 퇴직급여는 전출한 때의 통상임금에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전입법인의 퇴직급여는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의 통상 임금에 전입법인의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③ 퇴직급여의 안분계산사례

【사 례】

○갑법인에 4년간 재직하던 이세무씨가 갑법인이 출자한 을법인으로 전출되어 8년간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에 갑법인과 을법인이 퇴직자 이세무씨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부담액을 각각 계산하여라. 다만, 갑법인에서 을법인으로 전출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때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급여는 1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을법인에서 퇴직할 때 을법인에만 근무함으로써 인하여 지급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은 30,000,000원이다. 그리고 갑법인과 을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면 60,000,000원이 된다.

⇒ 갑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60,000,000\text{원} \times \frac{10,000,000\text{원}}{10,000,000\text{원} + 30,000,000\text{원}} = 15,000,000\text{원}$$

⇒ 을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60,000,000\text{원} \times \frac{30,000,000\text{원}}{10,000,000\text{원} + 30,000,000\text{원}} = 45,000,000\text{원}$$

④ 퇴직급여충당금의 현금인계 및 일부인계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회사에 전출되었으나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전출법인이 전입법인에게 전출되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인계한 때에는 전출법인은 그 시점부터 퇴직급여 추가부담의 의무는 없어진다. 그 이후의 퇴직급여는 전입법인만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전입법인은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의 전출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받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퇴직급여가 현금으로 인계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계되면 근속연수는 통산할 수 있고 지급할 퇴직급여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안분하여 전출법인도 부담하고 손금계상한다. 그러나 관계회사간의 퇴직급여계산과 부담은 서로간의 사실내용대로 손금·부담한다.

⑤ 관계회사간 근무·이전에서 퇴직급여 인계시의 회계처리사례

【사 례】

직접 또는 간접의 투자관계에 있는 갑법인에서 을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한다고 가정할 때 갑법인과 을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00년 12월 31일 갑법인은 사용인 “A”를 을법인에 전출함에 따라 동인의 00년 12월 31일까지 갑법인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상당액인 25,00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라.

⇒ 갑법인의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25,000,000 (대) 현금예금 25,000,000

○00년 12월 31일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상기 사용인 “A”를 전입받으면서

동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25,000,000원을 인계받다. 그러나 을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거 동 A의 갑법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소요액은 급여인상 등으로 30,000,000원이 었다.

⇒ 을법인의 회계처리

| | | | |
|----------|------------|-------------|------------|
| (차) 현금예금 | 25,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 |
| |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5,000,000 |

⑥ 출자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회계처리

사용인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에 진출되었으나 진출한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진출법인이 전입법인에 동 진출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로서 진출입 이후에 출자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진출법인은 그 소멸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출자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퇴직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법인에 있어서는 당해 전입한 사용인이 그 후 현실적으로 퇴직하게 될 때 지급하는 금액 중 진출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금액 이외의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할 때에는 이를 당해 전입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5)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퇴직급여승계와 외계·세무처리

① 전액 지급시 근무기간 통산안함

법인 포괄양수·도의 경우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통산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후 당해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써 인하여 양수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급여 중 양수법인에 근무하기 이전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양수법인의 수익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승계시 근무기간 통산 가능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당해 사용인이 승계

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그대로 승계하고 기간통산을 서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당해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액계산에 있어서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는 있는 실질과세개념에서 적용된다.

이밖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종사하였던 종업원의 퇴직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II.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26조제2호)

1. 복리후생비 등 손금산입 개요

① 복리후생비 및 종업원퇴직관련 사외지출액

사용인 및 임원의 근로제공 대가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액은 법인 차원에서 근로제공시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손금이 된다. 이러한 직접적 보상액 이외에 임직원의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제반 지출이 있는데 이는 임직원이 가처분소득으로 수취하여 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해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 혹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간접적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바, 영어적 표현으로는 복리적 이익(fringe benefit)으로서 근로소득세율이 높은 현실여건에 비추어 근로자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항목인 것이다. 중요한 항목으로 복리후생비와 퇴직보험관련 지출이 있다.

② 복리후생비의 개념

복리후생비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비 및 경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급료·임금·수당 등과는 달리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지급받는 임원이나 사용인이 판매와 일반관리부문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분류되고 제조부문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 법정복리비로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법률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료(당연손금사항임)
- ◎ 사용인에 대한 의료·보건·위생·수양·위안 등에 지출하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부담금·고용보험료·직장체육비 및 직장 연예비 등의 후생비
- ◎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의 국민복지연금의 각출액 중 사업주 부담금 등의 복지연금비(공과금의 개념임)
- ◎ 학교·병원 등의 복리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설구입비 및 그 유지관리비(시행령 제19조제15호 등에 의거 일반손금)
- ◎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되는 경조금 및 재형저축임의장려금 등도 손금산입되는 간접급여로 복리후생비에 속한다.

③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의 예시

법인이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의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직장체육비·연예비·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예시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비용지출액이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

이러한 복리후생비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것이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것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임원의 복리후생비 손금산입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으나 현재는 출자임원이나 비출자임원에 관계없이 손금용인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 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단체퇴직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그 지급의 내용, 즉 지급대상자·지급의 정도 및 그 성격 등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도 있다.

2. 일반적 복리후생비 지출액 (시행령 제45조제1항각호)

① 직장체육비와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란 사용인의 체육·신체단련과 건강 등을 위한 지출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당해 운동부의 유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체육대회경비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직장연예비란 사용인의 문화·예술 및 오락과 여가선용을 위해 지출한 연예비로서 사용인을 위로하기 위한 연예회·오락회 등을 개최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 및 기업의 생산성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는데 임원과 사용인들이 법인자체의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직원의 경영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종업원지주제도라 하며 이를 운영하는 조직을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운영비는 복리

후생비로 손금산입된다.

③ 건강보험료와 기타 부담금 중 사용자 부담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 등의 사업장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및 부담금은 사용자와 사용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50% 상당액은 종업원이나 임원 및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뿐 아니라 일반 임원과 출자임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법인부담분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밖에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인 급여에서의 50%를 법인이 부담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동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는 법인의 실비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인 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한편 법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연대납부금은 손금산입되지만 법인의 퇴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 이에 대한 과징금 등으로 법인이 추가로 납부한 진료비는 법인의 업무관련 경비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④ 직장보육시설운영비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탁아소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동 시설의 운영비를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⑤ 고용보험법상의 보험료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거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손금산입된다. 법인 임원이나 사용인이 자기급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급여금액에서 징수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납부하는데, 이 금액을 급여에서 징수하지 않고 사업자(법인)에 직접 납부한 경우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면서 손금산입한다. 직원급여납부액의 사업자납부액은 복리후생비 개념이 아니고 급여개념이 된다.

⑥ 경조금 및 위투금

법인의 임원이나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임원에는 출자임원과 비출자임원 모두가 포함되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조의금·위로금·장례비 및 축의금 등이 포함된다.

⑦ 복리시설비의 지출과 사용인조합단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는데 복리후생의 시설물 구입비 중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를 위한 복리시설비의 지출은 당해 조합이나 단체의 형태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한다.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면 지출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이 아니면 법인경비의 일부로 보는데 시설비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유지·관리·운영비는 복리후생 등으로 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⑧ 기타의 복리후생비

위에서 설명한 각종 복리후생비 이외에도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식당의 유

지관리비, 업무수행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부서의 공통경비로 지출하는 시상금 등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됨이 일반적이다.

3. 퇴직보험료 · 퇴직연금분담금 및 퇴직일시금 신탁금납부액

① 퇴직급여사외적립금 제도의 의의

본 법 제33조는 임원과 사용인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급여를 대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비용에 반영하여 설정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손금산입 계산한도액의 하나는 사업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의 25% 만큼이다.

즉, 세법상 의무확정의 개념에서 지급할 금액의 25% 만큼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계상 부채액의 관점에서 보면 75% 만큼 모자라므로 이를 외부에 퇴직연금 등의 적립금(저축성예치금)으로 가입하면 그 해당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보험 · 신탁 등은 유효기간 만료로 손금인정 안되며, 퇴직연금적립금과 퇴직연금신탁의 방법으로만 손금인정됨).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4조익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퇴직일시신탁금과 퇴직보험료 등

종전에는 퇴직금적립금의 사외적립 손금산입제도로써 단체퇴직보험 또는 종업원 퇴직신탁이 세법상 손비로 용인되었으나 2000. 10월부터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의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의 추가불입이 폐지되고 삭제되었다. 현실적 상황도 2000년 10월부터는 퇴직보험금과 퇴직신탁금 등으로 바뀌었고 2000년말에 상기 시행령이 규정되고 기존 시행령 제45조 규정 내용이 삭제되어 2001년부터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등의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손금산입항목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005년부터는 퇴직연금분담금도 손금산입됐다.

그러나 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2010.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③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퇴직일시금신탁·보험금 등

일반기업의 경우는 종전의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신탁업인가받은 금융기관의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등에 납부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분담금 등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추가납입할 수 없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설정해야 한다. 다만, 기 적립된 퇴직보험·신탁의 재원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지급가능하나 사용자에게 환급은 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적립금으로 소급 전환해야 한다.

④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현재 국민연금제가 있기는 하나 국민연금의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의 재원이 되지 못하므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다른 소득재원이 필요하여 2005년 12월부터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03. 8월 기준 5.8

년), 연봉제·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때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들)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하고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게 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우나,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리금 보장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율 제한(주식직접투자금지, 수익증권에 주식등 위험자산 편입비율 40%제한), 운용방법별로 이익 및 손실 가능성 제시 등의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즉,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하며,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 분할하여 받게 된다.

사용자는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금융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전체)근로자 명의로 적립하고, 최종 지급책임을 지며, 금융기관은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 등 관리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⑥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비교

| 구 분 |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
| 개 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 기 여 금 | 확 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
| 급 부 | 운영실적에 따름 | 확 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
| 위험부담 |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
| 지급보장 |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
| 기업부담 | 축소 불가 |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
| 통산제도 | 용 이 |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
| 연금수리 | 불필요 | 필요 |
| 선호계층 (예 상) |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 장기근속자 |
| 주요대상 (예 상) | 연봉제, 중소기업 |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23조 【퇴직연금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11. 2. 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2011. 2. 28 개정)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2011. 2. 28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011. 2. 28 개정)
5. 삭제 (2011. 2. 28)

⑦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의 회계·세무처리 관계

기업회계상 결산기말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이 원칙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시 차변에 당기원가·비용·손실 등(당기분)이나 전기손익수준손실(전기분) 등으로 손익반영 혹은 잉여금 감액처리한다.

세무상으로는 결산반영의 내부퇴직급여충당금반영익이 총 추계액×25%와 당년도 1년 근속임직원 급여×5%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손금산입되고 나머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면서 유보로 세무조정반영되어 이월된다. 퇴직연금부담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 손금산입하면서 ⊖유보로 세무조정하므로 내부충당금 초과 설정액의 손금불산입 ⊕유보와 대응된다. 퇴직연금부담액의 손금산입 ⊖유보금액은 향후 실제 퇴직금지급시 외부예치금을 받아와서 지급한 금액과 차감조정되면서 손금불산입 ⊕유보로 대응조정된다.

⑧ 퇴직관련연금부담액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계산

퇴직연금제도 시행으로 퇴직연금분담금은 아직 퇴직안해도 손금산입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은 전체 퇴직급여 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분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

정기여형은 분담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은 임원퇴직 시까지 부담한 회사부담금 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사부담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실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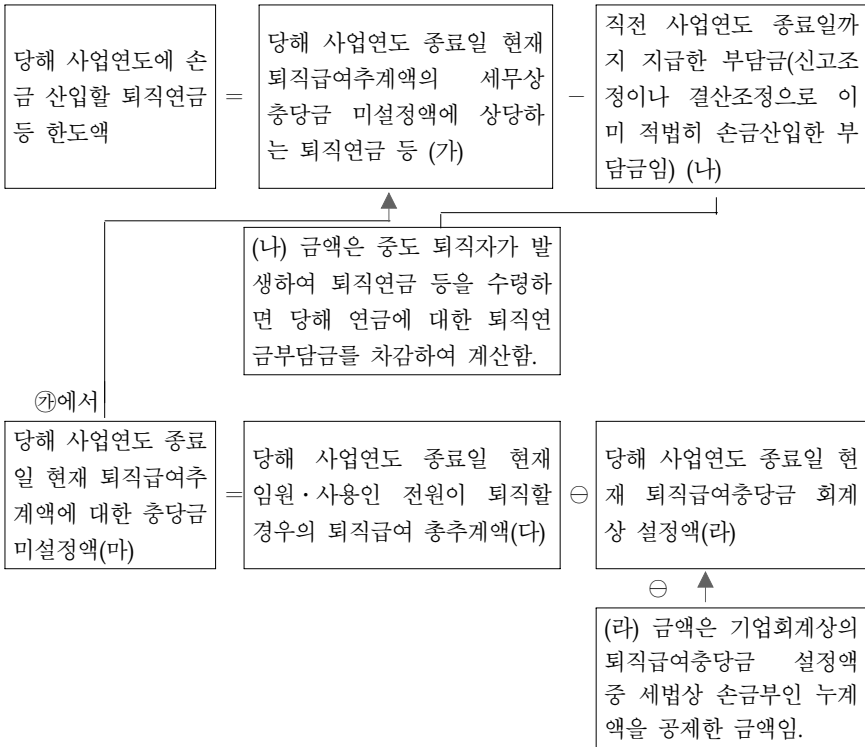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총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0. 12. 30 개정)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총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2010. 12. 30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2010. 12. 30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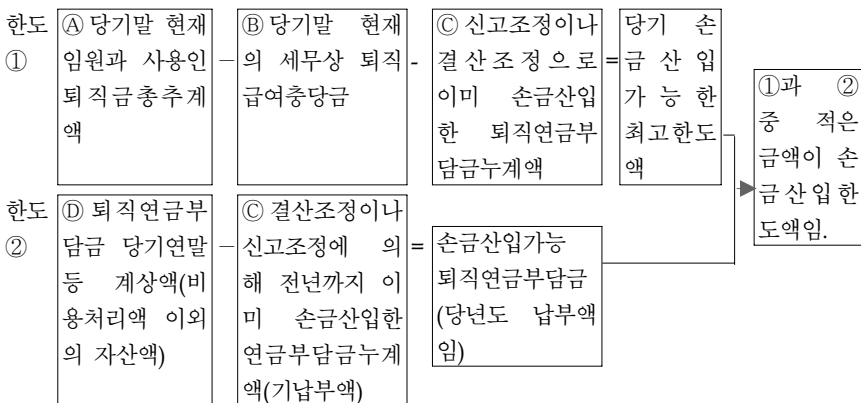
상기 시행령의 산식표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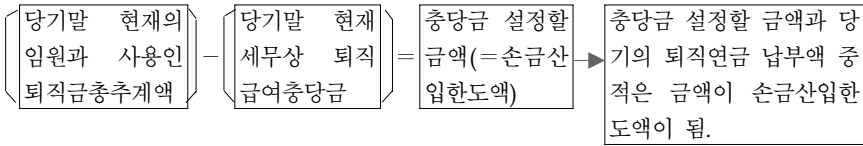
㉠에서

⑨ 이를 분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미 가입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등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2) 퇴직연금 등을 최초 가입하는 경우



- ㉠ 금액은 임직원 총퇴직금추계액
- ㉡ 금액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장부상 총당금잔액-기존부인액누계액)
- ㉢ 금액은 당기 금액전에 적법히 손금산입되어 있는 퇴직연금누계액(=전기말 적법한 세무상 퇴직연금부담금 반영액-기존손금부인액누계액-당기 중 수령해약액)
- ㉣ 금액은 당기의 퇴직연금부담금 총잔액(=기초퇴직연금금액(전기말까지 연금 부담금반영액)-당기 중 수령해약액+당기 퇴직연금부담금 등 납부액)
상기 산식의 내용을 각 항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⑩ 임원·사용인 전원 퇴직시의 퇴직급여추계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의 임직원이 전원 퇴직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⑪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장부와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 손금으로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잔액(즉 기업회계상금액-세무상부인누계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⑫ 퇴직보험·신탁 등의 적립금 잔액 처리

2011. 1. 1 이후 퇴직보험·신탁 등 추가 납입할 수 없으므로 기 적립한 퇴직보험·신탁 등을 해지시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없고, 피보험자 등 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적립금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유지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만 지급할 수 있다.

⑬ 퇴직연금 전환전 근무기간분 퇴직연금분담금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해 퇴직연금 분담금을 외부로 지출하는 경우에 그 지출금액은 이미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⑭ 직전연도까지 기지급한 부담금

퇴직연금 등으로서 기불입한 잔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사용인의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기불입한 부담금의 누적잔액이며 이미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다음의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② 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이의 산식표현은 다음과 같다.

$$\boxed{\text{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등 누계액}} = \boxed{\text{기불입부담금 등 총누계액}} - \boxed{\text{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자에 지급한 퇴직연금 등의 해약 및 퇴직관련 해약금 및 퇴직연금}}$$

⑮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범위 계산례

참고로 이의 계산사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사 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라.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전임원 및 사용인이 일시에 퇴직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100,000,000원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50,000,000원(세무상 부인액 10,000,000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 30,000,000원
-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이 추가지급한 퇴직연금부담금 50,000,000원(손금산입 한도)
- 당해 사업연도까지 퇴직한 자에 지급한 퇴직연금 12,000,000원
- 사업연도 00. 1. 1~00. 12. 31

즉, 퇴직연금부담금 등 설정대상액 60,000,000원(A)=100,000,000원-(50,000,000-10,000,000),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연금(B)는 30,000,000원-12,000,000원=18,000,000원이므로

⇒ 손금산입범위액(C)=(A)-(B)

즉, 60,000,000원-18,000,000원=42,000,000원이 된다. 당연도 지급액 50,000,000원보다 적으므로 42,000,000원을 손금산입함.

⑯ 퇴직연금부담금납부액 등의 부담금 등의 비용 및 자산의 이중회계처리

정부에서 퇴직부담금 등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여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예치금으로서 자산계상되며 일반 퇴직급여충당금 전

입액은 기업회계대로 비용·손실·잉여금 감액반영한다. 퇴직연금부담금예치금은 평소에 자산처리했다가 연말재무상태표작성에서 100% 설정하여 부채로 반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액으로 순액표시한다. 따라서 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연금의 특징을 고려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으로 비용반영하며, 퇴직연금부담금은 신고조정방법의 손금산입 원칙

기업회계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전체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이 계좌에서 연금급여를 지급하므로 자산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또는 매년 중간정산받아 스스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하며 퇴직시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매년 지출시에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⑱ 결산조정방식에 의한 손금산입인 경우

소기업은 퇴직보험료 등은 일단 자산계상하면서 내부충당금전입의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보험금 등으로 비용처리하는 이중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 결산반영방식을 택하면 결산에는 손금이나 손실로 반영되어야 한다.

즉, 한도초과액이 차연도에 당연손금추인되는 것이 아니고 환입으로 계상한 후 재전입으로 결산반영하여야 손금용인된다는 뜻이다. 이밖에 재해보장보험료 등은 퇴직보험료 등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보험료와 동일하게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피보험자인 사용인이 재해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퇴직보험금 이외에 보험약관상 재해보장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고 이에 대한 재해보장보험료로 퇴직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어 손금산입된다.

⑩ 퇴직보험금 등의 회계·세무처리예시(결산조정방법)

다음의 경우로서 퇴직보험금의 회계및 세무처리를 예시한다.

【사 례】

| 구 분 | 퇴 직 금 여 총 당 금 | | |
|-----|---------------|-------------|------------|
| | 불 입 액 | 한 도 액 | 한도초과액 |
| 00년 | 148,000,000 | 130,000,000 | 18,000,000 |
| 01년 | 157,000,000 | 180,000,000 | — |

【결산조정 사례】

○00년도의 퇴직보험료 불입(퇴직보험예치금)시 회계처리는

| | | | |
|-------------|-------------|-------------|-------------|
| (차) 퇴직보험예치금 | 148,000,000 | (대) 현금 및 예금 | 150,000,000 |
| 지급수수료(사업비) | 2,000,000 | | |
| (차) 퇴직급여 | 148,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 148,000,000 |

⇒ 이 중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18,000,000원(=148,000,000-130,000,000)은 손금
산입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01년에 00년의 손금불산입유보액 18,000,000원을 손금추인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우선 환입처리함.

| | | | |
|-------------|------------|---------------|------------|
| (차) 퇴직급여충당금 | 18,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환입 | 18,000,000 |
| | | (특별이익으로 계상) | |

• 당년도 불입액은 일반처리함.

| | | | |
|---------------------|-------------|-------------|-------------|
| (차)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157,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 157,000,000 |
| (일반관리비 : 당기비용) | | | |

• 전년도 부인액의 환입후 재전입처리

| | | | |
|---------------------|-------------|-------------|-------------|
| (차)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18,000,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 18,000,000 |
| (특별손실로 계상) | | | |
| (차) 퇴직보험예치금 | 157,000,000 | (대) 현금 및 예금 | 160,000,000 |
| 지급수수료(사업비) | 3,000,000 | | |

⇒ 여기서 퇴직급여충당금환입 18,000,000원은 전기에 손금불산입된 이월이익
이므로 당기특별이익으로 반영되고 익금불산입하면서 △유보처분하여 소멸
시킴.

당기에 특별손실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8,000,000원은 당해 연도

의 손금산입한도액인 180,000,000원의 범위내에 전액 손금산입됨.

㉔ 퇴직보험료의 신고조정 회계·세무처리 예시

- 퇴직보험료 등의 외부예치납부시 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정회계처리만 하고,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만 손금산입한다.

| | | | |
|--------------|-------------|-----------|-------------|
| (차변) 퇴직보험예치금 | 148,000,000 | (대변) 현금예금 | 150,000,000 |
| 지급수수료 | 2,000,000 | | |

(자산계상금액은 당연도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한다. 단, 일부만 손금산입은 안되고 전액을 손금산입 세무조정한다)

- 퇴직자 발생으로 퇴직보험금 수령시

| | | | |
|-----------|------------|--------------|------------|
| (차변) 현금예금 | 50,000,000 | (대변) 퇴직보험예치금 | 50,000,000 |
|-----------|------------|--------------|------------|

-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자에게 지급시

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안한 경우 직접계상

| | | | |
|-----------|------------|-----------|------------|
| (차변) 퇴직급여 | 45,000,000 | (대변) 현금예금 | 45,000,000 |
|-----------|------------|-----------|------------|

(퇴직금 비용반영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며, 기존의 퇴직예치금 손금산입(⊖유보)를상쇄 소멸시킨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감소함.

| | | | |
|--------------|------------|-----------|------------|
|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 45,000,000 | (대변) 현금예금 | 45,000,000 |
|--------------|------------|-----------|------------|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하는바, 손금산입된 금액은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을 세무조정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익금산입금액은 당초의 (⊖유보)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㉕ 일반기업회계기준(부록 - 적용사례 : 제2장 종업원 급여)

【사례 1.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배경정보>

A기업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20X6년 1월 1일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새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20X6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으로 하므로 당해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기 전의 근무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과거근무기간(20X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퇴직금제도가 유효하고, 장래근무기간(20X6년 1월 1일 이후)에 대해서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다. 20X6년 12월 31일 현재 각 제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
| 대상기간 | 20X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기간 | 20X6년 1월 1일부터 20X6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 근무기간 |
| 퇴직급여충당부채(①) | 1,000,000,000원 | 90,000,000원 |
| 퇴직연금미지급금(②) | 해당사항 없음 | 50,000,000원 |
| 퇴직연금운용자산(③)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원 |
| 퇴직보험예치금(④) | 600,000,000원 | 해당사항 없음 |
| 순부채(①+②-③-④) | 400,000,000원 | 40,000,000원 |

<회계처리>

- (1) 재무상태표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표시한다.

| | | |
|-------------|-----------------|-------------|
| II. 비유동부채 | | |
| X. 퇴직급여충당부채 | 1,090,000,000 | |
| 퇴직연금미지급금 | 50,000,000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100,000,000 | |
| 퇴직보험예치금 | (-) 600,000,000 | 440,000,000 |

- (2) 위 예에서 만약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50,000,000원이어서 10,000,000원의 초과자산이 발생하였지만 문단 21.14(2)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가 또는 나)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 | |
|--------------|--|--------------------------|
| II. 비유동자산 | | |
| X. 투자자산 | | |
| (Y) 퇴직연금운용자산 | | 10,000,000 ¹⁾ |

| | | |
|-------------|-------------------------------|-------------|
| II. 비유동부채 | | |
| X. 퇴직급여충당부채 | 1,090,000,000 | |
| 퇴직연금미지급금 | 50,000,000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140,000,000 ²⁾ | |
| 퇴직보험예치금 | (-) 600,000,000 | 400,000,000 |

【사례 2】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배경정보>

다음에 제시된 각 회사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X4년에서 20X7년 사이에 새로 입사하거나 퇴사한 종업원은 없다고 가정한다. 종업원의 연간 임금총액, 근속기간, 회계기간 말 현재 기업회계기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과 같고, 임금이 매년 5%씩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고 가정한다(이하 금액 단위는 천원).

| 연 도 | 연간임금총액 | 근속기간 (년) | 연간임금총액 / 12 | 퇴직급여충당금 |
|------|-----------|----------|-------------|---------|
| 20X4 | 1,157,625 | 4 | 96,469 | 385,875 |
| 20X5 | 1,215,506 | 5 | 101,292 | 506,461 |
| 20X6 | 1,276,282 | 6 | 106,357 | 638,141 |
| 20X7 | 1,340,096 | 7 | 111,675 | 781,722 |

<사례 2-1>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B회사는 20X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유지해왔으나 20X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X6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1)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 전액을 20X6년 1월 1일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초과자산이 퇴직금제도의 부채와 상계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에서 차감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초과액은 별도의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2) 위 주1) 참조

과 20X6년에 발생한 퇴직급여(비용) 전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차) 퇴직급여충당금 506,461 (대) 현 금 506,461
 퇴 직 급여 106,357 현 금 106,357

- (2)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20X6년

(차) 퇴 직 급여 25,323 (대) 퇴직급여충당금 25,323

<사례 2-2>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C회사는 20X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유지해왔으나 20X6년 1월 1일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1)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 전액을 20X6년 1월 1일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20X6년 1월 1일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06,461 (대) 현 금 506,461

- (2)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20X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급여(비용)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20X6년 이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110,000천원의 부담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20X6년

(차) 퇴 직 급여 131,680 (대) 퇴직급여충당금 131,680
 퇴직연금운용자산 110,000 현 금 110,000

㉔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제조원가와 관리비 등 적정배분 회계처리

퇴직연금부담금은 법인의 임직원 전체를 위한 비용이므로 제조원가부분과 일반관리비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관리비는 당기비용이고 제조원가는 제품재고자산에 영향을 주어 차기로 이월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전연도분에 대한 추가보험료계상액은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므로 안분필요는 없다.

㉓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취지

기업회계기준의 취지는 법인의 입장에서 종업원이나 임원이 장차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소요액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맞게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비용은 100% 부채성충당금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는 달리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의 25%까지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 차이를 보임은 물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당기에 발생한 비용을 당기에 계상하고자 하는 건전한 기업회계관행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제도가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제도인 것이다.

새로운 상품인 퇴직연금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소유·처분권을 갖는 것으로 퇴직사유발생시 직접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결산재무제표상으로는 실제 외부지출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차감상계표시한다.

㉔ 채무담보제공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상기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2000년까지의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에 적용되는 개념임).

그러나 단체퇴직보험약관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납입재원이 자기자본 자금으로 납입하건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건 간에 손금산입가능여부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담보로 대출한 경우 외에는 전액 손금산입된다.

㉕ 퇴직보험금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익금산입시기

퇴직보험 등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받는 확정배당금을 정산기준일, 즉 배당금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책임준비금이자도 익금산입한다. 확정배당금이나 준비금이자도 보험예치금으로 가산되면 익금산입하면서, 또한 보험금을 당기불입한 것으로 보므로 손금산입 해당금액이 된다.

㉖ 퇴직급여 받는 경우의 차감계상

법인의 사용인의 실질퇴직사유가 발생되면 보험회사에서 퇴직보험금을 받는 데, 이러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계상한다.

㉗ 퇴직보험 등의 해약과 전환시 손금·익금산입여부

2010. 12. 31까지만 퇴직보험·신탁으로 납입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며, 2011. 1. 1 이후부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퇴직보험 등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없으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해지한 퇴직보험 등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하여만 손금인정된다. 즉, 기 퇴직보험금 등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익금반여하지 않으므로 전환후 추가 납입하는 부담금만 손금으로 반영하면 될 것이다.

㉘ 퇴직보험 등의 해약과 전환시 회계처리

기업회계측면에서도 퇴직보험 등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법인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퇴직연금전환 후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만 종전 보험료 납입과 같이 퇴직급여 또는 퇴직급여운영자산 등으로 반영하면 된다.

㉙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제출 규정

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면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시행규칙 제82조 【서 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추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2011. 2. 28 개정)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2011. 2. 28 개정)

III. 여비·교육·훈련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26조제3호)

① **법인에 귀속될 손비로서의 여비·교육비 등은 손금**

법인의 익금창출 및 순자산증가와 직접·간접적인 관련하에 지출되는 여비·교육비·훈련비는 당연히 발생·지출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물론 이러한 금액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손금계상(확정결산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사용하는 여비·교육·훈련비 등이 손금산입되는데, 거래처나 고객 및 기타 법인에 대한 업무관련자를 위한 여비·교육비도 법인의 수익창출에 관련된 금액이라면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지출금액이 아니거나 수익창출과 관련성이 없는 접대·향응목적이라면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여야 하며, 업무 및 수익에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다.

②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교육훈련비는 손금불산입

법인 임원·사용인이 아닌 외부자의 비용으로서 법인 이익·수익에 관련없는 여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특히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나 교육훈련비는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일반적인 여비·교육·훈련비는 당연손금이면서도, 특별히 지배주주 등에 대한 금액만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이들이 법인경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어떤 형태의 여비·교육·훈련비도 손금불산입한다.

③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 등

임원이나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업무관련성을 초과되는 금액은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하여 손금산입은 하되 근로소득과세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 손금반영한다. 또한 입증증빙이 불비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비용이나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예를 들어 숙박비, 일당 및 하루당 숙박비 등)은 손금산입된다.

④ 해외여비 등에 대한 손금산입 문제

임직원의 해외시찰·훈련 등 해외여비도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업무와 관련있다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는 손비로 인정된다. 반면에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관광목적의 여행이라든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이더라도 합리적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비용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합리적 필요인정금액초과액은 임원·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적절하면 여비로서 전액 손비로, 부적절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손비구성항목이 달라지게 된다. 임원의 여행동반이 신체장애로 인한 상시보좌동반, 국제회의 배우자 동반 필수요건, 기타 전문기능인 동반인 경우도 손비로 인정된다.

⑤ 업무상 불필요한 여행이 병행된 여비의 안분계산 손금산입

임원 또는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당해 여행과 관련하여 관광여행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여행을 겸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여행기간에 따라 해외여비를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손금산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부인한다.

IV. 타법인과 공동조직·사업운영 발생비의

손금산입범위 (법 제26조제4호)

① 타법인과 조직공유 및 공동사업영위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타법인과 동일조직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공동으로 행함에 따른 발생원가나 지출금액 중 당해 법인의 수익·익금과 합리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손금산입된다. 이러한 발생·지출손비 중 개별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산입되는데 공동운영경비·관련 비용 등은 출자비율·매출액·인원수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산입반영하며, 합리적 배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당법인과 타법인의 관계에 따라 주주이면 배당소득, 다른 관계라면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② 특수관계 아닌 법인간 공동사업은 약정에 따른 배분

특수관계법인 등 타법인과 공동사업에 있어서 출자방식으로 특정사업을 공동영위하면 출자총액의 구성비율로 관련비용을 안분하며, 출자사업 아닌 모든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이나 조직에 관련된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미선택시 직전 사업연도 선택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5년간 적용)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각 법인의 인원이 참여하는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의 경우는 매출액비율로 구분할 수 있지만,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008. 2. 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010. 2. 18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부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 제 (2008. 2. 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부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개정)

③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액으로 배분

특수관계법인간 공동사업시 매출액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 매출액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의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비율 또는 구매금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외공동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비율로, 국내공동광고선전비는 국내의 매출액 비율만으로 배분한다. 공동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에 대하여 매출액 비율이 1% 미만,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이 0.1% 미만 법인, 청산절차개시법인 등은 제외시킬 수 있다.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9. 3. 30 개정)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2008. 3. 31 신설)
 -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삭 제 (2008. 3. 31)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V. 업무 직접 관련성 적은 경비의 손금불산입

(법 제26조제5호)

① 업무관련 적은 경비의 포괄적 손금부인 규정

각 호에 열거한 경비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업무과 직접 관련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비는 손금불산입된다.

본 호는 포괄적 손금불산입 규정이지만,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직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